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942

발의연월일: 2021. 6. 21.

발 의 자:서삼석・이상헌・이병훈

박 정・오영환・주철현

김영진 • 위성곤 • 양기대

이성만 • 전용기 • 민형배

김철민 · 김승남 · 김승원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,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, 1994년도 이전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달리 신설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신 용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.

또한 법에 규정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,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신용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조합의 설립목 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(안 제39조).
- 나.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 제목 중 "최고"를 "독촉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최고 (催告)"를 "독촉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)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법 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수행하 고 있는 다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일한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사무소 설치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<u>최</u>	제39조(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<u>독</u>
<u>고</u>) ① 지구별수협이 조합원에	<u>촉</u>) ①
게 통지 또는 <u>최고(催告)</u> 를 할	<u>독촉</u>
때에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	
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나 조	
합원이 지구별수협에 통지한 연	
락처로 하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